

총 합 감 사

감 사 보 고 서

- 2023년 전북·전남·충남신용보증재단 종합감사 -

2023. 12.

중 소 벤 처 기 업 부
감 사 관 실

목 차

- I. 감사실시 개요 0

- II. 감사대상 기관 현황 0
 - 1. 일반현황 0
 - 2. 재무(수입)현황 0

- III.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0
 - 1. [전북·전남·충남]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누락 0
 - 2. [전북·충남] 구상금 분할상환 약정관리 소홀 0
 - 3. [전남] 구상금 소송에 따른 손해금산정 부적정 0
 - 4. [전남·충남] 배당금 지연수령 관련 손해금 전가 등 부적정 0
 - 5. [충남] 보증료 산정 및 수납 부적정 0
 - 6. [전북·전남·충남] 담보공탁금 회수업무 소홀 0
 - 7. [전북] 공탁된 배당금 수급권리자 변경 미흡 0
 - 8. [전북·전남·충남] 보증료 환급업무 부적정 0

9. [전북] 보증채무이행 업무처리 부적정	0
10. [전남]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사후관리 미흡	0
11. [전남·충남] 퇴직금 지급 부적정	0
12. [전북·전남·충남] 항공마일리지 관리 소홀	0
13. [전북·전남·충남] 업무추진비 등 관리 소홀	0
14. [전북·충남] 법정 의무교육 운영 소홀	0
15. [충남] 외부강의 신고기간 미준수	0
IV. 처분 요약	0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3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전북·전남·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기능 수행, 조직운영·복무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주기능 수행의 투명성·공정성 및 기관운영의 효율성·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전북·전남·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로 회계·계약·복무 등 기관운영 뿐만 아니라 기본재산, 보증 및 채권관리 등 재단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우선 실지감사에 앞서 2023. 6. 5.부터 같은 해 6. 23.까지 서면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같은 해 6. 26.부터 7. 14.까지 15일간 감사인원 5명(산하기관 4명 포함)을 투입하여 관련 서류 검토와 담당자 면담 등 실지감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해 7. 17.부터 7. 18.까지 2일간 추가로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 결과 확인된 사항과 관련하여 피감기관 등을 대상으로 질문·답변 과정을 거치는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23. 12. 12.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 기관 현황

1. 일반 현황

가. 설립 근거 및 주요 업무

전북, 전남 및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하여 2002년 12월, 2001년 7월과 1998년 10월에 각각 설립된 보증기관으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역 내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대여 보증 등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조직 및 인력

전북, 전남 및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조직은 4부 7지점 1센터, 3부 1팀 6지점 2센터, 7부 9지점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2. 재무(수입)현황

2022년도 기준 [표 2]와 같이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전체 수입액은 911억 원으로, 이중 중앙정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총 494억 원, 중앙정부 102억 원 지방자치단체 261억 원, 금융기관 등 131억 원)이 가장 큰 비중(54.3%)을 차지하고 있고,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전체 수입액은 663억 원으로, 이중 중앙정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총 333억 원, 중앙정부 112억 원 지방자치단체 94억 원, 금융기관 등 127억 원)이 가장 큰 비중(50.2%)을 차지하고 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전체 수입액은 1,236억 원으로, 이중 중앙정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총 562억 원, 중앙정부 172억 원 지방자치단체 225억 원, 금융기관 등 165억 원)이 가장 큰 비중(45.5%)을 차지하고 있다.

Ⅲ. 감사결과

Ⅲ-1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누락

1. 업무 개요

전북, 전남 및 충남신용보증재단(이하 신용보증재단은 “재단”이라 한다)은 구상권 채무관계자(이해관계인 포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이 진행될 경우 법무법인 등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한편, 소송이 승소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전북, 전남 및 충남재단 「소송업무처리기준」 제23조 등에 따르면 구상금청구의 소 이외의 소송에서 재단이 승소한 경우, 「소송위임변호사운용기준」에 따라 지급된 소송위임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1)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재단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111건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법원에 접수하였고, 이 중 78건(70.2%)을 승소하였다.

전북재단은 「소송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북재단은 위 78건 중 64건에 대해서는 지출된 소송비용을 채무관계자로부터 정상 회수한 반면, 나머지 14건은 소송이 확정되고도 최단 122일에

서 최장 1,725일이 지난 2023년 6월 감사일 현재까지 소송비용액 총 5,390,000원에 대한 확정결정을 법원에 신청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재단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52건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법원에 접수하였고, 이 중 27건(51.9%)을 승소하였다.

전남재단은 「소송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남재단은 위 27건 중 25건에 대해서는 지출된 소송비용을 채무관계자로부터 정상 회수하였거나 회수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반면, 나머지 2건은 소송이 확정되고도 최장 325일이 지난 2023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소송비용액 총 3,103,800원에 대한 확정결정을 법원에 신청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재단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97건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법원에 접수하였고, 이 중 51건(52.6%)을 승소하였다.

충남재단은 「소송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충남재단은 위 51건 중 35건에 대해서는 지출된 소송비용을 채무관계자로부터 정상 회수하였거나 회수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반면, 나머지 16건은 소송이 확정되고도 최단 189일에서 최장 1,578일이 지난 2023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소송비용액 총 9,121,200원에 대한 확정 결정을 법원에 신청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전북, 전남 및 충남재단은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면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이 안 된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신청·회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북, 전남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미신청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조속히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1. 업무 개요

전북 및 충남신용보증재단(이하 신용보증재단은 “재단”이라 한다)은 채무자가 구상금을 분할 상환하는 경우, 채무자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강제집행을 보류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전북 및 충남재단 「채무감면규정」 등에 따르면 재단은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수취 시 분할 수취(통상 8년)가 가능하고, 같은 규정 등에 따르면 채무자가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며, 이후 담보권 실행 또는 강제집행 등 구상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1)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재단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88건, 5,395,273,291원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유지 중이다.

전북재단은 「채무감면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3개월 이상 구상금에 대한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구상권 회수를 위한 채권보전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전북재단은 위 388건의 분할상환약정 계약 중 “○○” 등 7건(업체)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도 3개월 이상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아 기한이익을 상실시켜야 하는데도 2023년 6월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상실시키지 아니한 채

채권보전조치(강제집행)를 보류하는 등 기한이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총 43,883,523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등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재단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774건, 12,092,162,470원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유지 중이다.

충남재단은 「채무조정기준」에 따라 채무자가 3개월 이상 구상금에 대한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구상권 회수를 위한 채권보전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충남재단은 위 774건의 분할상환약정 계약 중 “●●” 등 24건(업체)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도 3개월 이상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아 기한이익을 상실시켜야 하는데도 2023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상실시키지 아니한 채 채권보전조치(강제집행)를 보류하는 등 기한이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총 208,523,402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등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전북 및 충남재단은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분할상환약정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채무감면규정」 등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채권보전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북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분할상환약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채무감면규정」 등에 따라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고, 약정금액 중 회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보전조치 등을 통해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1. 업무 개요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전남재단”이라 한다)은 「구상권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위변제 후 강제집행이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법원에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금 등에 대해서는 소송상대방(채무자)에게 청구하여 회수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전남재단 「소송업무처리기준」(이하 “처리기준”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소송상대방(채무자)에게 손해금을 청구할 때에는 대위변제일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재단이자율(연 8%)을, 소장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특례법”이라 한다)상 이자율(연 12%)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전남재단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무불이행 채무자를 상대로 총 5,275건의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중 162건의 구상금이 손해금 감면 없이 전액 완제되었다.

「처리기준」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손해금 등을 청구할 때에는 대위변제일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재단이자율(연8%)을 적용하되, 소장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특례법」상 이자율(연12%)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낮게 적용하여 손해금을 산정·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전남재단은 소장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발생한 손해금을 산정

할 때에는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연 8%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손해금을 산정·청구하고 있었다.

이에 위 이자율 적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남재단은 총 162건, 236,288,399원 중 43건, 102,603,029원은 손해금을 정당하게 적용한 반면, 나머지 119건, 133,685,370원에 대해서는 소장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이보다 낮은 연 8%의 이자율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손해금을 산정·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처리기준」 등에 따른 정당 손해금인 178,624,055원보다 44,938,685원을 적게 청구하여 전남재단에 같은 금액만큼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남재단은 구상금 소송이 확정되면 당초에 적용하였던 연 8% 이자율을 「소송특례법」상 이자율인 연 12%로 조정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손해금산정·청구 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구상금 소송 관련 손해금산정·청구 시 관련 법 등에서 정한 이자율을 임의로 낮게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1. 업무 개요

전남 및 충남신용보증재단(이하 신용보증재단은 “재단”이라 한다)은 채무불이행 등 보증사고 발생 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이후 법원이 가압류 부동산 등을 경매·매각한 후 배당금을 배정하여 배당기일을 통보하면 재단은 법원에 출석하여 이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구상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 배당금 손해금 전가 관련 >

「대법원 2012다65874(2014.9.4.선고)」 판례에 따르면 배당절차에 따라 배정된 배당금의 배당확정일(변제효력발생일)은 통상 배당표가 확정되었을 때이고, 가압류권자로서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안소송의 확정일이 공탁사유 소멸일로서 배당확정일이 되므로 채권자(재단)는 배당확정일을 초과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실제 배당금 수령일을 배당확정일로 소급한 후 「소송특례법」상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손해금을 산출하여야 한다.

< 배당금 이자 수입처리 관련 >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이하 “보관금처리지침”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르면 경매절차의 배당 시 배당기일 이후에 배당금을 수령하여 발생한 이자는 배당받을 자(재단)에게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공탁금(배당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1)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재단이 2018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배당금 수령을 지연하여 채무자에게 청구한 손해금은 6,758,972원이고, 이자수입은 283,225원이다.

전남재단은 「대법원 2012다65874(2014.9.4.선고)」 판례 등에 따라 배당기일(가압류권자는 소송확정일)을 초과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수령 주체인 재단에 있으므로 배당기일부터 수령일 사이에 발생하는 손해금을 채무자에게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관금처리지침」에 따르면 배당기일 초과수령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재단에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채무자의 구상금회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전남재단(채권자)은 “○○(주)” 등 47개 업체에 대해 배당기일을 초과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손해금을 자체 산출하여 총 6,758,972원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가 하면, 채권자가 배당기일을 초과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을 때는 배당기일부터 수령일 사이에 공탁금 이자가 발생하고, 이는 채권자인 전남재단의 이익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공탁금이자수입 283,225원을 채무자의 구상금회수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 채권자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금 6,758,972원이 채무자에게 부당하게 청구되는 한편, 채권자가 본인의 자산(공탁금이자수입 283,225원)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재단이 2018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배당금 수령을 지연하여 채무자에게 청구한 손해금은 10,594,323원이고, 이자수입은 343,818원이다.

충남재단은 「대법원 2012다65874(2014.9.4.선고)」 판례 등에 따라 배당기일(가압류권자는 소송확정일)을 초과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이에 대한 귀책사유

가 수령 주체인 재단에 있으므로 배당기일부터 수령일 사이에 발생하는 손해금을 채무자에게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관금처리지침」에 따르면 배당기일 초과수령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재단에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채무자의 구상금회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충남재단(채권자)은 “◇◇” 등 86개 업체에 대해 배당기일을 초과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손해금을 자체 산출하여 총 10,594,323원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가 하면, 채권자가 배당기일을 초과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을 때는 배당기일부터 수령일 사이에 공탁금 이자가 발생하고, 이는 채권자인 충남재단의 이익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공탁금이자수입 343,818원을 채무자의 구상금회수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 채권자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금 10,594,323원이 채무자에게 부당하게 청구되는 한편, 채권자가 본인의 자산(공탁금이자수입 343,818원)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전남 및 충남재단은 위 감사결과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배당금 관련 이자수입을 채무자 구상금회수에 사용하거나 배당금 지연수령으로 발생한 손해금을 채무자에게 전가(청구)하는 일 등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남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배당금 이자수입을 채무자 구상금회수에 사용하거나 배당금 지연수령으로 발생한 손해금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채무자에게 청구한 손해금에 대해서는 공탁금 이자수입으로 처리된 구상권회수 내역을 감안하여 채무자에게 환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1. 업무 개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하 “충남재단”이라고 한다.)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증만료기한 도래 시 채무자(소상공인 등)의 요청에 따라 보증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충남재단 「보증료 등의 운용기준」(이하 “운용기준”이라고 한다.) 제6조 등에 따르면 당초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보증만료기한을 연장할 때에도 최초계약당시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충남재단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155,280건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중 15,332건의 보증에 대해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운용기준」에 따르면 당초 “고정보증료율”로 계약한 보증의 만료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최초계약당시 보증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충남재단은 “◆◆” 등 47개 업체의 경우 당초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증만료기한연장 시에도 최초 계약당시 보증료율(0.7%)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임의로 높게 적용하여 보증료(1.0~1.4%)를 산정·수납하였다.

특히, 위 47건 중 약 40%에 해당하는 19건을 C 계장이, 약 28%에 해당하는

13건을 A 차장이 처리하였고 나머지 15건은 B 계장 등 10명이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채무자(소상공인 등)로부터 총 4,577,799원의 보증료를 과도하게 수납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등 의견】

충남재단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운용기준」에 따라 보증료를 정확히 수납함과 아울러 과도하게 수납한 보증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환급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① 앞으로 「운용기준」에 따라 보증료를 수납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보증료율을 5회 이상 부당하게 적용한 관련자(C 계장, A 차장)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며(주의)

② 과도하게 수납된 보증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환급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1. 업무 개요

전북, 전남 및 충남신용보증재단(이하 신용보증재단은 “재단”이라 한다)은 채무불이행 등 보증사고 발생 시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금전을 담보(담보공탁금)해 놓고 채무자의 자산(부동산 등)을 가압류한다.

이후 채무자에 대한 담보사유가 소멸되면 법원에 담보취소 결정을 신청하여 기(既)맡겨 놓은 담보공탁금을 회수한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를 결정하고 담보제공자에게 담보공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1)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재단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 감사일 현재까지 채권보전조치(부동산 가압류 등)를 위해 총 943,090,990원의 담보공탁금을 법원에 제공하였다.

전북재단은 「민사소송법」 등에 따라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법원에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담보공탁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북재단은 위 담보공탁금 총 943,090,990원 중 930,740,990원은 정상 회수하거나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반면, 나머지 12,350,000원(1.3%)은 담보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담보사유 소멸일로부터 최단 107일에서 최장 1,277일이 지난 2023년 6월 감사일 현재까지 담보취소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담보공탁금 총 12,350,000원이 미회수 상태로 방치되어 전북재단 사무 등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재단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채권보전조치(부동산 가압류 등)를 위해 총 2,301,243,060원의 담보공탁금을 법원에 제공하였다.

전북재단은 「민사소송법」 등에 따라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법원에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담보공탁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남재단은 위 담보공탁금 총 2,301,243,060원 중 2,237,291,060원은 정상 회수하거나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반면, 나머지 63,952,000원(2.8%)은 담보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담보사유 소멸일로부터 최단 58일에서 최장 311일이 지난 2023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담보취소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담보공탁금 총 63,952,000원이 미회수 상태로 방치되어 전남재단 사무 등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3)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재단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채권보전조치(부동산 가압류 등)를 위해 총 1,820,063,400원의 담보공탁금을 법원에 제공하였다.

충남재단은 「민사소송법」 등에 따라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법원에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담보공탁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충남재단은 위 담보공탁금 총 1,820,063,400원 중 1,539,173,400원은 정상 회수하거나 담보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반면, 나머지 226,890,000원(12.5%)은 담보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담보사유 소멸일로부터 최단 87일에서 최장 1,757일이

지난 2023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담보취소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담보공탁금 총 226,890,000원이 미회수 상태로 방치되어 충남재단 사무 등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전북, 전남 및 충남재단은 미회수 담보공탁금에 대해 조속히 회수 조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보공탁금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북, 전남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담보공탁금의 담보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신속하게 회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미회수 담보공탁금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1. 업무 개요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전북재단”이라 한다)은 채무불이행 등 보증사고 발생 시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 자산(부동산 등)을 가압류하고, 이후 법원이 가압류 자산을 경매·매각한 후 배당금을 배정·공탁하면 법원에 출석하여 이를 수령하는 방식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공탁법」 제9조에 따르면 공탁된 배당금(이하 “공탁배당금”이라 한다)를 수령하려는 자는 그 권리를 증명하도록 되어 있고, 「민사집행법」 제161조에 따르면 채권자가 법원에 공탁배당금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꿔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공탁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전북재단은 “□□”과 “(주)■■■” 등 2개 업체에 대해 채무불이행 등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채무관계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공탁배당금 205,730원과 790,780원을 각각 배정받았다.

한편, 위 채무자 중 “□□”은 공탁금이 배정된 이후 채무관계자(연대보증인)가 전북재단에 공탁배당금 상당의 금액을 2010. 9. 4. 합의·변제하였고, “(주)■■■”는 보증부 대출금을 2008. 10. 7. 모두 상환하여 가압류 피보전채권이 소멸되었다.

전북재단은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공탁배당금을 배정받은 후 변제 등으로 수령을 포기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집행법원에 공탁배당금 수령 포기 의사를 표시하여 법원이 공탁배당금에 대한 수급권리자를 채무자나 전액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로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북재단은 공탁배당금 수령 포기 사유가 발생하여 법원으로부터 배정받은 공탁배당금(2건, 총 1,041,510원)의 수급권리자를 채무자 등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2023년 6월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변경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다.

그 결과 위 공탁배당금 1,041,510원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로 귀속될 우려가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전북재단은 위 공탁배당금에 대한 수령포기 의사를 표하여 법원이 수급권리자를 채무자 등으로 조속히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위 공탁배당금 1,041,510원에 대한 수급권리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 등으로 조속히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 업무 개요

전북, 전남 및 충남신용보증재단(이하 신용보증재단은 “재단”이라 한다)은 「지역 신용보증재단법」 등에 따라 신용보증 등 각종 보증을 운용하면서 보증의 이용 대가로 보증료를 받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전북, 전남 및 충남재단 「보증료 등의 운용기준」(이하 “운용기준”이라 한다) 제15조 등에 따르면 보증료 납부기일 내에 보증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일 다음 날 이후의 보증료를 보증이용자에게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1)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재단은 신용·특례보증 등 보증을 운용하면서 2018년 1월부터 2023년 5월 까지 채무자에게 받은 보증료는 총 87,617,079,030원이고, 이 중 채무조기상환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증료 환급액은 19,619,438,256원이다.

「운용기준」에 따르면 보증료 납부기일 내에 보증이 해지되었을 경우, 잔여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채무자에게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단은 보증료 환급사유 발생 시 이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북재단은 환급보증료 발생액 총 19,619,438,256원 중 15,311,215,433원은 보증 해지 익영업일에 환급한 반면, 나머지 4,251,189,857원은 보증 해지일로부터 최장 1,535일이 지나 환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57,032,966원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말 기준 보증해지일로부터 최장 1,136여일이 지나도록 환급하지 않

은 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보증료를 적시에 환급하지 않거나 미환급(57,032,966원) 상태로 방치하여 보증신청인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신뢰성 및 만족도가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재단이 신용·특례보증 등 보증을 운용하면서 2018년 1월부터 2023년 5월 까지 채무자에게 받은 보증료는 총 69,879,347,810원이고, 이 중 채무조기상환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증료 환급액은 19,913,589,066원이다.

「운용기준」에 따르면 보증료 납부기일 내에 보증이 해지되었을 경우, 잔여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채무자에게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단은 보증료 환급사유 발생 시 이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남재단은 환급보증료 발생액 총 19,913,589,066원 중 14,250,321,060원은 보증 해지 익영업일에 환급한 반면, 나머지 5,660,063,200원은 보증 해지일로부터 최장 1,125일이 지나 환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3,204,806원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말 기준 보증해지일로부터 최장 1,553여일이 지나도록 환급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보증료를 적시에 환급하지 않거나 미환급(3,204,806원) 상태로 방치하여 보증신청인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신뢰성 및 만족도가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3)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재단이 신용·특례보증 등 보증을 운용하면서 2018년 1월부터 2023년 5월 까지 채무자에게 받은 보증료는 총 119,533,361,715원이고, 이 중 채무조기상환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증료 환급액은 17,904,608,811원이다.

「운용기준」에 따르면 보증료 납부기일 내에 보증이 해지되었을 경우, 잔여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채무자에게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단은 보증료 환급사유 발생 시 이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충남재단은 환급보증료 발생액 총 17,904,608,811원 중 8,724,917,084원은 보증 해지 익영업일에 환급한 반면, 나머지 9,157,271,130원은 보증 해지일로부터 최장 2,408일이 지나 환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2,420,597원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말 기준 보증해지일로부터 최장 1,189여일이 지나도록 환급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보증료를 적시에 환급하지 않거나 미환급(22,420,597원) 상태로 방치하여 보증신청인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신뢰성 및 만족도가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전북, 전남 및 충남재단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환급대상 보증료가 신속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함과 아울러 미환급 보증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환급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북, 전남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보증료 납부기일 내에 보증이 해지되어 환급보증료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환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미환급 보증료에 대해서는 「보증료 등의 운용기준」 등에 따라 환급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1. 업무 개요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전북재단”라고 한다)은 「보증채무이행규정」에 따라 소상공인 등(채무자)이 금융기관(채권자)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전북재단 「보증채무이행심사 표준처리기간 운용기준」(이하 “운용기준”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보증채무이행청구”를 신청하였을 때는 이를 접수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북재단 「취업규칙」 제2조에 따르면 직원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맡은 바 직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전북재단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9,555건의 “보증채무이행청구”를 접수하였다.

「운용기준」에 따르면 “보증채무이행청구”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재단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 초과이자 등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북재단은 2022년도의 경우 총 1,641건을 접수하여 5건에 대해 “보증채무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처리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5건 중 3건은 D 대리가 각 9일을, 나머지 2건은 E 계장이 각 6일을 지연하여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보증채무이행청구”를 접수하여 기한 내 처리하였다면 지출하지 않았어도 될 118,445원의 초과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여 전북재단에 같은 금액만큼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관계기관 등 의견】

전북재단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보증채무이행 등을 지연하여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보증채무이행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D 대리, E 계장)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 업무 개요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전남재단”라고 한다)은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취급기준」에 따라 대위변제기업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에 대해 재기지원 가능성을 평가하여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전남재단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취급기준」(이하 “취급기준”이라 한다) 제5호에 따르면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보증취급 후 6개월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현장조사를 1회 실시하여, 부실징후 예방 및 보증부대출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전남재단은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운용하면서 2018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61개 업체에 920,000,000원의 보증을 지원하였다.

전남재단은 「취급기준」에 따라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취급한 후 1년 이내에 사업장 현장조사(이하 “현장조사”라고 한다)를 통해 부실징후 예방 및 보증부대출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남재단은 “△△”의 경우 24개월이 지난 후에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의 경우에는 38개월이 지난 2023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도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취급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보증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위 보증의 안정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관계기관 등 의견】

앞으로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취급 건에 대한 현장실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취급 건에 대한 현장실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F 차장)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 업무 개요

충남 및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신용보증재단은 “재단”이라 한다)은 자체 「퇴직금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및 퇴직금 중간정산(이하 “중간정산”이라 한다) 등을 신청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 충남신용보증재단 >

충남재단 「퇴직금규정」 제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직원은 성실과 근면을 바탕으로 직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 전남신용보증재단 >

전남재단 「퇴직금규정」 제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기본급월액(연봉월액),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대, 가족수당, 특정업무수행경비(직책급업무수행경비)의 합을 90일로 나눈 금액과 상여금, 연차휴가보상금, 명절휴가비의 합을 12분의 3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을 말하며,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복무규정」 제4조에 따르면 직원은 성실과 근면을 본분으로 하고, 담당한 직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완수하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1)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재단(경영관리부)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G 계장 등 퇴직자 53명에게 총 1,360,616,052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충남재단 「복무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퇴직금 정산 등 업무처리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충남재단 경영지원부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퇴직자 총 53명 중 G 계장 등 52명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정당하게 지급한 반면,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H 부장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426,265원을 퇴직금 수령대상자가 아닌 I 부장에게 오지급하는 등 퇴직금이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총 852,530원의 퇴직금이 잘못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 등 급여 지급업무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재단(경영지원부)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J 계장 등 퇴직자 16명에게 총 612,083,530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전남재단 「복무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퇴직금 정산 등 업무처리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남재단 경영지원부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퇴직자 총 16명(중간정산자 1명 포함) 중 J 계장 등 13명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정당하게 지급한 반면, K 차장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재직기간을

누락한 채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를 그대로 지급하는 등 퇴직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총 139,140원의 퇴직금이 잘못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 등 급여 지급업무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등 의견】

충남 및 전남재단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퇴직금 등 급여가 오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급여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남 및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① 앞으로 퇴직금 등 급여가 오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급여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아울러 오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조속히 환수 및 환급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1. 업무 개요

전북, 전남 및 충남신용보증재단(이하 신용보증재단은 “재단”이라 한다)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직유관단체로서 자체 「여비규정」 등에 따라 출장 등 여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 전북신용보증재단 >

전북재단 「여비규정」 제28조의2에 따르면 국외여행자는 해당항공사에 회원가입 후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규정 제34조에서는 「여비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이하 “처리기준”이라 한다) 등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처리기준」 “제9장 다”항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내와 국외를 포함하여 공무여행에 의해 발생하는 마일리지(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고 한다)를 전산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후 공무여행 시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항공권 등을 발권하도록 되어 있다.

< 전남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

전남 및 충남재단 「항공마일리지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국내외 출장으로 항공여행을 하는 임직원은 해당 항공사에 회원가입 후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이를 전산 또는 관리대장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1)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재단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27명(중복인원 포함)이 공무 여행을 수행하였다.

전북재단 임직원은 「처리기준」 등에 따라 공무여행을 수행하고 개인별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전산(이음)에 등록하여 이를 차후 공무여행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북재단은 「여비규정」에 국외 공무여행과 달리 국내 공무여행의 경우 항공마일리를 적립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제대로 적립 및 등록하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2018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발생한 국외 및 국내 공무여행 전반을 확인한 결과, 전북재단 내 공무여행 수행자 총 27명 중 L 부장 등 17명은 국외 공무여행을 수행하고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를 정상적으로 등록한 반면, M 부장 등 9명(♀♀ 이용자 1명 제외, 마일리지 제도 없음)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무여행을 수행하고서도 공적 항공마일리를 적립 또는 등록하지 않는 등 공적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N 대리 등 4명은 국내(제주도) 공무여행을 수행하고 적립된 항공마일리지(1,880마일)를 전산에 등록하지 않았고, M 지점장 등 5명은 국내(제주도) 공무여행을 목적으로 항공권을 발권하면서 항공사 회원가입 없이 발권하여 항공마일리지(총 2,432마일) 자체가 적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재단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57명(중복인원 포함)이 공무 여행을 수행하였다.

전남재단 임직원은 「관리기준」에 따라 공무여행을 수행하고 개인별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전산(이음)에 등록하여 이를 차후 공무여행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8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남재단 內 공무여행 수행자 총 45명(중복인원 12명 제외) 중 O 차장 등 36명은 공무여행을 수행하고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정상적으로 등록한 반면, P 전 이사장 등 9명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공무여행을 수행하고서도 공적 항공마일리지 적립 또는 등록하지 않는 등 공적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P 전 이사장은 국내 및 국외 공무여행을 수행하고 적립된 항공마일리지(25,522마일)를 전산에 등록하지 않았고, Q 본부장 등 8명은 국내 및 국외 공무여행을 목적으로 항공권을 발권하면서 항공사 회원가입 없이 발권하여 항공마일리지(총 4,422마일) 자체가 적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재단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20명(중복인원 포함)이 공무여행을 수행하였다.

충남재단 임직원은 「관리기준」에 따라 공무여행을 수행하고 개인별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이를 차후 공무여행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8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충남재단 內 공무여행 수행자 총 19명(중복인원 1명 제외) 중 R 차장 등 9명은 공무여행을 수행하고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총 1,656마일)를 정상적으로 등록한 반면, S 본부장 등 6명(♣♣ 및 ■■ 이용자 2명 제외, 마일리지 제도 없음)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공무여행을 수행하고서도 공적 항공마일리지 적립 또는 등록하지 않는 등 공적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 본부장 등 3명은 국내 및 국외 공무여행을 수행하고 적립된 항공마일리지(1,656마일)를 관리대장에 등록하지 않았고, T 계장 등 3

명은 국내 공무여행을 목적으로 항공권을 발권하면서 항공사 회원가입 없이 발권하여 항공마일리지(1,076일) 자체가 적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재단은 항공마일리지 관련 규정을 개정(국내 포함)하고, 앞으로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등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나) 전남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앞으로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등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항공 출장 시 적립 및 등록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① 앞으로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등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등록된 항공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전산에 등록하며,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등록에 대한 임직원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② 아울러 국내 공무여행 시에도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하도록 여비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나) 전남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등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등록된 항공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전산에 등록하며,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등록에 대한 임직원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 업무 개요

전북, 전남 및 충남신용보증재단(이하 신용보증재단은 “재단”이라 한다)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직유관단체로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등에 근거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 공통사항 >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를 준용하여야 하고,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집행규칙”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집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화환·화분을 제공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집행규칙」 해설집에 따르면 “유관기관”이라 함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는 제외되고, 해당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경찰서, 군부대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며, “퇴임 또는 진출하는 경우”의 의미는 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소재한 국가기관, 교육기관, 경찰서, 군부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임하거나 새로 부임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장에게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화분을 제

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밖에 지방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일반 의원에게 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충남신용보증재단 >

충남재단 「법인카드 사용기준」 제6조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심야(23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직무관련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없이 휴무일,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심야 등에 사용한 경우 담당부서장에게 사용경위를 소명한 후 즉시 적법한 카드로 변경 결제하며, 변경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용금액을 재단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1)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재단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등에 총 185건의 화환·화분을 제공하였다.

전북재단은 「집행규칙」 등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화환·화분을 제공할 때에는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기관의 장이 퇴임하거나 새로 부임할 경우로만 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북재단은 위 185건, 10,740,000원 중 165건, 9,350,000원(87.1%)을 ▽▽군청 부군수 취임 등에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북재단은 유관기관의 장이 아닌 군청 부군수와 지방의회 의원 등에게 77건, ▼▼은행 등 금융기관에 38건, 지역 언론사와 관할 구역이 아닌 유관기관의 장에게 50건, 총 165건에 대해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는 대상에게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그 결과 업무추진비 9,350,000원이 전북재단 사무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재단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등에 총 78건의 화환·화분을 제공하였다.

전남재단은 「집행규칙」 등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화환·화분을 제공할 때에는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기관의 장이 퇴임하거나 새로 부임할 경우로만 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남재단은 위 78건, 5,240,000원 중 53건, 3,640,000원(69.5%)을 ○○과장 취임 등에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남재단은 유관기관의 장이 아닌 군청 과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에게 16건, ▼▼은행 등 금융기관에 20건, 지역 언론사와 관할 구역이 아닌 유관기관의 장에게 14건,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3건, 총 53건에 대해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는 대상에게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그 결과 업무추진비 3,640,000원이 전남재단 사무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 충남신용보증재단

가. 업무추진비(화환·화분) 집행 부적정

충남재단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등에 총 88건의 화환·화분을 제공하였다.

충남재단은 「집행규칙」 등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화환·화분을 제

공할 때에는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기관의 장이 퇴임하거나 새로 부임할 경우
로만 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충남재단은 위 88건, 7,231,800원 중 54건, 4,399,800원(60.8%)을 ◀◀
부군수 취임 등에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남재단은 유관기관의 장이 아닌 군청 부군수
등에게 2건, ♡은행 등 금융기관에 11건, 관할 구역이 아닌 유관기관의 장에게
35건,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6건, 총 54건에 대해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
는 대상에게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
다.

그 결과 업무추진비 4,399,800원이 충남재단 사무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
고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나. 법인카드 심야 사용 부적정

충남재단(경영관리부)은 법인카드 사용자, 사용일시, 사용금액 및 사용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등 법인카드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충남재단은 임직원이 심야(23시 이후)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을 때는 직무관
련성 입증을 위해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
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금
액에 대해 경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2018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심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도 총 2
건에 대해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우 경영관리부는 법인카드 사용자에게 직무관련성 등의 확인을 위
해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경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이에 대해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전산(이음)에 등록하여 경비가 처리되도록 하였다.

【관계기관 등 의견】

전북, 전남 및 충남재단은 앞으로 업무추진비가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 전북, 전남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업무추진비 등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법인카드 사용기준」 등에 따라 심야 및 휴일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을 때는 직무관련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심야에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공공채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1. 업무 개요

전북 및 충남신용보증재단(이하 신용보증재단은 “재단”이라 한다)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직유관단체로서 「부패방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 전북신용보증재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공직유관단체 포함)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에 따르면 부패방지교육을 운영할 때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전체 직원 교육 이수율이 75% 미만인 기관은 부패방지교육 운영 부진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 충남신용보증재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분기별 1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제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1)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재단(전략기획부)은 「부패방지법」 등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부패방지법」 등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북재단 전략기획부는 부패방지교육에 공직자 행동강령이 포함되어야 함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교육을 운영하여, 2020년도의 경우 교육대상자 71명 중 15명(21.1%)이, 2021년도의 경우 교육대상자 88명 중 8명(9%)이, 2022년도의 경우에는 교육대상자 87명 중 9명(10.3%)만이 교육을 수료하는 등 부패방지교육을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재단(감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퇴직급여법」 등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충남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정 의무교육을 누락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안전·보건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은 물론 과태료 또한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정 의무교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충남재단 감사실은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퇴직연금제도 교육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교육을 누락하는 등 법정 의무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등 의견】

전북 및 충남재단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북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기관주의)

1. 업무 개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하 “충남재단”이라 한다)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충남재단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임직원의 외부강의 신고 등에 대한 복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충남재단 「검직허가 및 외부강의 등에 관한 기준」(이하 “외부강의기준”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임직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인·장소 및 사례금 등을 포함한 “외부강의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충남재단 임직원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충남테크노파크 등 총 44개 기관에서 193회(27명)에 걸쳐 외부강의 등을 하고 사례금으로 계 242,000,000여원을 수령하였다.

「외부강의기준」 등에 따르면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인·장소 및 대가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를 누락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U 부장 등 3명은 위 기간 동안 외부강의 등을 하고서도 총 5회에 걸쳐 그 사실을 최단 3일에서 최장 14일까지 지연하여 신고하는 등 「외부강의기

준」을 위반하여 외부강의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등 의견】

충남재단은 앞으로 외부강의 등을 수행한 후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외부강의 등을 수행한 후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V 지점장, U 부장)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IV. 처분 요약

1. 전북신용보증재단

□ 처분요구: 주의 4건(개인 2), 통보 2건, 개선 1건, 시정 4건

연번	건명	관계부서	처분요구		조치 기한
			기관	개인	
1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누락	재기지원부	시정	-	'24.2월
2	구상금 분할상환 약정관리 소홀	재기지원부	시정	-	'24.2월
3	담보공탁금 회수업무 소홀	재기지원부	시정	-	'24.2월
4	공탁된 배당금 수급권리자 변경 미흡	재기지원부	통보	-	'24.2월
5	보증료 환급업무 부적정	기업보증부	시정	-	'24.2월
6	보증채무이행 업무처리 부적정	기업보증부	-	주의(2명)	'24.2월
7	항공마일리지 관리 소홀	경영지원부	통보·개선	-	'24.2월
8	업무추진비 등 집행 관리 소홀	경영관리부	주의	-	'24.2월
9	법정의무교육 운영 소홀	전략기획부	주의	-	'24.2월

□ 신분상조치: 주의 2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처분계획			행위
				주의	경고	징계	
1			D	○	-	-	보증채무이행 업무처리 부적정
2			E	○	-	-	보증채무이행 업무처리 부적정

2. 전남신용보증재단

□ 처분요구: 주의·경고 4건(개인 2), 통보 1건, 시정 5건

연번	건명	관계부서	처분요구		조치 기한
			기관	개인	
1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누락	회생지원부	시정	-	'24.2월
2	구상권 소송에 따른 손해금산정 부적정	회생지원부	경고	-	'24.2월
3	배당금 지연수령 관련 손해금 전가 등 부적정	회생지원부	시정	-	'24.2월
4	담보공탁금 회수업무 소홀	회생지원부	시정	-	'24.2월
5	보증료 환급업무 부적정	보증지원부	시정	-	'24.2월
6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사후관리 미흡	보증지원부	-	주의(1명)	'24.2월
7	퇴직금 지급 부적정	경영지원부	시정	주의(1명)	'24.2월
8	항공마일리지 관리 소홀	경영지원부	통보	-	'24.2월
9	업무추진비 등 집행 관리 소홀	경영지원부	주의	-	'24.2월

□ 신분상조치: 주의 2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처분계획			행위
				주의	경고	징계	
1			F	○	-	-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사후관리 미흡
2			W	○	-	-	퇴직금 지급 부적정

3. 충남신용보증재단

□ 처분요구: 주의 7건(개인 5), 통보 1건, 시정 8건

구분	건명	관계부서	처분요구		조치 기한
			기관	개인	
1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누락	동부재기지원부	시정	-	'24.2월
2	구상금 분할상환약정관리 소홀	동부재기지원부	시정	-	'24.2월
3	배당금 지연수령 관련 손해금 전가 등 부적정	동부재기지원부	시정	-	'24.2월
4	보증료 산정 및 수납 부적정	보증기획부	시정	주의(2명)	'24.2월
5	담보공탁금 회수업무 소홀	동부재기지원부	시정	-	'24.2월
6	보증료 환급업무 부적정	보증기획부	시정	-	'24.2월
7	퇴직금 지급 부적정	인사부	시정	주의(1명)	'24.2월
8	항공마일리지 관리 소홀	인사부	통보	-	'24.2월
9	업무추진비 등 집행 관리 소홀	경영관리부	주의·시정	-	'24.2월
10	법정의무교육 운영 소홀	감사실	주의	-	'24.2월
11	외부강의 신고기간 미준수	감사실	-	주의(2명)	'24.2월

□ 신분상조치: 주의 5명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처분계획			행위
				주의	경고	징계	
1			C	○	-	-	보증료 산정 및 수납 부적정
2			A	○	-	-	보증료 산정 및 수납 부적정
3			X	○	-	-	퇴직금 지급 부적정
4			V	○	-	-	외부강의 신고기간 미준수
5			U	○	-	-	외부강의 신고기간 미준수